

|   |                                      |      |             |
|---|--------------------------------------|------|-------------|
|  | <h2 style="margin: 0;">대학자체평가규정</h2> | 규정번호 | 3-1-10      |
|   |                                      | 제정일자 | 2010.03.01. |
|   |                                      | 개정일자 | 2023.05.01. |
|   |                                      | 개정차수 | 6차          |
|   |                                      | 소관부서 | 성과혁신센터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 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의 종류 및 주기) 평가의 종류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 :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행정부서 및 학과 평가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2장 평가기구

제7조(평가주관부서) ① 평가 업무의 전반은 성과혁신센터가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자체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3.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총괄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과혁신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의 경우에는 보직의 임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기본방향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영역, 지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결과의 심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성과혁신센터) ① 자체평가의 실무추진을 위하여 성과혁신센터를 둔다.

② 성과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내·외부위원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제12조(평가계획 수립) 성과혁신센터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부)에 통지한다.

제13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부)는 성과혁신센터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평가실시) ① 성과혁신센터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성과혁신센터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실사) 성과혁신센터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부서 및 학과(부)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성과혁신센터장은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부)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7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제6조 2호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대학발전계획에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